



캡스톤디자인 운영 규정

제정일	2022. 9. 1
개정일	
개정차수	차
담당부서	산학협력과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동서대학교 교과목 중 캡스톤디자인(캡스톤디자인 및 종합설계) 과목으로 개설한 교과 및 캡스톤디자인 교과목과 연계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정의) 캡스톤디자인이란 재학 기간동안 배운 전공교과목 및 이론 등을 바탕으로, 산업체(또는 사회)가 필요로 하는 과제를 대상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과 종합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창의성과 실무능력, 팀워크, 리더십을 배양하도록 지원하는 정규 교과목을 의미한다.

제 3조 (운영 및 지원) ① 학부(과) 교육과정 중 정규교과목으로 편성된 과목에 한하여 학점을 부여하고, 교육부 지침과 정보공시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
1. 교과목명에 “캡스톤 디자인(capstone design)” 또는 “종합설계”를 부기하여 캡스톤 디자인 여부가 명확해야 한다.

2. 시제(작)품 제작 등을 위한 실험·실습비 또는 교육프로그램 지원비가 지급되어야 한다.

3. 팀 과제로 1학기 이상 운영되는 경우로, 캡스톤 디자인의 목적에 맞는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한다.

②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강의계획서에는 산업체명, 산업체 인사, 교육내용(프로젝트) 등 캡스톤디자인 교과목과 연계 산업체의 관련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.

③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운영 결과보고는 학기 종료 후 강좌 기준의 교과목CQI보고서와 운영 현황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산학취업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기되어 있어야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.

1.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산업체 연계 내용(참여 기업명, 참여 기업 지도내용, 산업체 인사 직위 등)

2.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수업 운영 및 시제(작)품 제작 등을 위한 실험·실습비 내역

3.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운영 결과 내역

4.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강좌별 교과목CQI결과보고서

④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운영을 위해 별도로 예산항목을 정하여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실험·실습비를 지원 할 수 있다.

⑤ 캡스톤디자인 교과목과 연계하여 캡스톤디자인 과제발표회 및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를 참가 할 수 있다.

⑥ 캡스톤디자인 교과목과 연계한 캡스톤디자인 과제발표회를 위한 재료비, 시제(제)품제작비 등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하며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시상품 등을 지급 할 수 있다.

제 4조 (운영위원회) ① 캡스톤디자인 운영의 평가 및 환류개선을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산학취업처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산학취업처장이 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

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캡스톤디자인 운영에 관한 사항
2. 캡스톤디자인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
3. 캡스톤디자인 운영 개선 및 환류에 관한 사항

제 5조 (개정) 규정 및 관련 지침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구성원(교원 및 학생대표)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, 수렴된 내용을 개정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